

보도 일시	2022. 7. 25.(월) 12:00 2022. 7. 26.(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7. 25.(월) 12:00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오현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수 (044-202-8831) 사무관 이용학 (044-202-8834)

산재보험 가입자 수 2,000만 명 돌파 임박

- 지속적인 적용 대상 확대로 '22년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 1,987만 명 -

-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,987만 명*이고,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, '특고종사자') 직종 3개 분야**가 입직 신고(약 12만 명) 되면 조만간 2,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.

* 가입자현황(만명): 근로자(1,892), 특고종사자(78), 학생연구원(8), 중소기업주 등(9)

** ① 마트·편의점 배송기사, ② 택배 지·간선 기사(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), ③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

-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(948만명)와 비교하면 2.1배 증가한 것이고,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.1배 증가했다.

-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이다.

-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,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.

- 아울러,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,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.

-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,
 -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·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.
-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,
 -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·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.
 - 이에 방과후 강사, 통학버스기사,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하여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,
 -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한편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·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방안 등(적용방식, 적용대상, 보험료 부과·징수 방법 등)을 마련할 예정이다.
-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”라고 하면서,
 - “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,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노·사 의견수렴을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

특고·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안 주요 내용

1

적용 대상

□ (적용범위)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, “특고”와 “플랫폼노동 종사자”를 → “노무제공자”의 범주*로 재정의

*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

○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직종 선정기준*을 법률에 명시

* 업무상 재해 위험, 노무제공 형태 등

□ (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) 현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, 보험료징수법에 “휴업등 신고 제도”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 마련

* (現) '21.7.1부터 질병·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→ (改)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(캐디 등)은 “휴업등 신고제도”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

2

보험료 부과·징수

□ (산정) “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”(보수) × 보험료율

○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“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·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”으로 함

○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

* 직종 단위에서 요율을 조정하고 재해실적에 따른 할인·할증 미적용

□ (부담) 종사자와 사업주가 1/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(면제 또는 경감) 근거 마련

□ (징수)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,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

*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

3**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**

- ☐ (플랫폼 운영자 의무)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,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
- ① (신고)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,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
 - *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
 - ② (공제·납부)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
 - ③ (자료제공 협조)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
 - ④ (전용계좌 개설)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
- ☐ (플랫폼 운영자 지원)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

4**급여 및 보상제도**

- ☐ (급여산정)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“평균보수” 개념 신설
-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산정
 -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
- ☐ (업무상 재해)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
- ☐ (휴업급여)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)
- ☐ (법 시행 전 보조사업장 재해 보호)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